

2024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2024년 1월 30일(화) 14:00~16:00
- ◎ 회의장소 본관 4층 회의실
- ◎ 참석위원 김OO(위원장, OO처장)
이OO(OO처장)
이OO(OO팀장)
박OO(학교법인 OO팀 직원)
김OO(학부OO)
이OO(학부OO)
임OO(OO 대표이사)
- ◎ 불참위원 박OO(대학원OO)
최OO(대학원OO)
- ◎ 배석 반OO(OO팀 차장)
오OO(간사, OO팀 과장)



[안건1]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 2024학년도 본예산, 잉여금 처리 원칙

1. 안건 내용

1)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증감	추경예산	본예산대비 증감률
교비회계	189,622	18,705	208,327	9.86%

*교비회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2) 2024학년도 본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액
세입	124,428	85,737	210,165	20,543
세출	124,428	85,737	210,165	20,543

*세입:등록금, 수강료,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산/부채, 전기이월자금

**세출: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예비비, 자산/부채

3) 잉여금 처리 원칙

① 잉여금의 정의

- 전년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과 당해연도 본예산의 전기이월자금의 차이
- 등록금회계만 해당

② 잉여금의 처리 원칙

-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이월의 경우 해당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 이월의 경우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
- 일부 장학금 등에 대해서 이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등록금회계의 예산 이월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여, 이월금을 최소화하고자 함

2. 회의 내용

1)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 중 보수금액 관련

교직원위원A	교원 및 직원 보수 추가경정예산 관련하여 보완 설명을 요청함
교직원위원C	기존엔 직원노조와의 합의사항을 교원에도 적용해왔으나, 교원노조 설립 이후엔 직원노조 및 교원노조와 각각 합의가 필요해짐. 그러나 최근 2년간 교원노조와는 합의가 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게 되었음.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우려사항이 발생함. 첫 번째는 학교 재정상황과 상관없이 중재재정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 이사회 등으로 이어지는 학교 예산 편성 절차가 무력화되고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임을 설명함
교직원위원A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감가상각적립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운영적자에 해당하는 상황임. 중재재정 결정은 이러한 재정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보다는 교내 화합과 협력을 통하여 학교 발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재재정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함. 그러나 앞서 말한 우려사항(등록금심의위원회 무력화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의 기본 원칙과 상충하고 대학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이해를 구하고자 함을 부연 설명함

2) 2024학년도 본예산 증가분 관련

교직원위원B	2024학년도 본예산 증가분에 대하여 현상유지를 위한 금액과 질적 개선을 위한 금액을 구분하여 알 수 있으면, 학교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을 제시함
교직원위원C	본예산 증가분 약 200억 원 중 고정비성(인건비, 공과금, 용역비, 감가상각적립 등) 70억여 원, 별도 재원으로 인한 예산 편성(산단 연구비, 국가장학금, 하계대학, 기금, 정부초청장학생 등) 100억여 원, 투자성격의 예산(2024학년도 주요 추진사업, 학부 및 대학원 배정 등) 30억여 원임을 답변함 추가로 교육부 방침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 무전공 모집비율 최대 10점 가점에 대한 부분도 적극 대응하여 예산 추가 확보 계획임을 설명함
학생위원A	총예산 규모가 큰 타 대학들 대비하여 학생사회에 투입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 그래서 자유전공 모집인센티브 평가를 통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은 적극 찬성하는 바임. 그러나 자유전공 확대에 따라 기존 학생들의 교내 공간사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요청함

3. 의결 사항

-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안건2] 대학원 석박통합과정 등록금 책정

1. 안건 내용

1) 일반대학원 EIC전공 석박통합과정 등록금 책정

(단위: 원/학기)

학과/전공	1~4학기 (석사 등록금 준용)	5학기 이상 (박사 등록금 준용)	비고
서비스매니지먼트	7,500,000	8,500,000	해당 학기에 의한 등록금 책정
부동산학	6,190,000	6,500,000	
글로벌법무학	6,800,000	8,300,000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등록금이 상이한 위 학과/전공의 석박통합과정에 관하여,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변경 제도를 고려하여 상기와 같이 책정함

2. 회의 내용

1) 석박통합과정 등록금 책정 관련

교직원위원A	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했지만 사정상 중간에 석박통합과정으로 바꾸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감안하여, 학기별로 각각 석사 및 박사 등록
--------	--

	금을 준용하는 책정안은 타당해보임을 언급함
교직원위원C	EIC전공의 경우 학위과정 변경을 하는 것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조기 수료 등을 위해 간혹 발생할 수 있으며, 석박통합과정 등록금을 별도 책정하는 방안과 학기별 석사 및 박사 등록금을 준용하는 방안 중 대학원 의견을 반영하여 후자로 책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함

3. 의결 사항

-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법률 준수] 「고등교육법」 제11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1. 회의 통지 및 자료 송부

등록금 심의 위원회 개최일	일시·장소·안건 통지일 준수 여부(7일 전)	회의 자료 송부일 준수 여부 (5일 전)
2024.01.30	여	여

2. 소집·개회의결 관련 사항

구분	현황	비고
소집 요건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회(재적 과반수 출석) 정족수 충족	여	
의결(출석 과반수 찬성) 정족수 충족	여	

3.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구성단위	위원수	비율	비고
학생	4	44.5%	
교직원	4	44.5%	
전문가	1	11.0%	
합계	9		

* 학생 위원 30% 이상, 구성단위별 비율 50% 미만 준수

2023. 2. 2.
위의 사실을 확인함